에코델타시티 대성베르힐 17블록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거주요건	재당첨제한
민영		비규제지역	부산광역시 거주자	10년
전매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1년 ※ 본 청약의 경우 해당 주택의 최초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기에 실질적 전매는 가능함.		없음	적용	공공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일반공급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4.06.28.(금)	2024.07.03.(수)	2024.07.08.(월)	2024.07.09.(화)~2024.07.16.(화)	2024.07.19.(금)

1 공통 유의사항

- [견본주택 운영 관련 유의사항]
- 「에코델타시티 대성베르힐 17블록」아파트는 '23.05 분양 완료 이후 견본주택 운영을 종료하여 관람이 불가하며, 홈페이지(https://edc-verthill.co.kr)에 게시된 분양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전 반드시 현장 및 주변 여건 등을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따라 공급되는 아파트는 공정에 따라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의 추가, 변경, 취소가 불가능 합니다.

■ 청약 시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계약취소주택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자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계약취소주택으로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되었던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에 따라 시공 중입니다. 따라서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을 모두 수락하는 조건으로만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하오니, 이점 청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급계약 체결 후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의 추가, 변경, 취소가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계약취소주택으로 입주시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모두 **현금납부**하셔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3.04.25.)로부터 1년간(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전매가 금지 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u>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u>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이하 "계약취소주택"이라 함)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 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일반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중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 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m²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취소주택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부적격 당첨자)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됩니다.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edc-verthill.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 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다만, 제19조제5항 및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과의 계약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 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지 유의사항

2

-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6.28.(금)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4930032입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4.07.(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3000117이므로,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제외)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일반공급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4.07.03.(수)	2024.07.08.(월)	2024.07.09.(화)~2024.07.16.(화)	2024.07.19.(금)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본사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	신로108번길4, 5층 대성베르힐)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023.04.25.)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1년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까지)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강서구청 건축과-27829호(2024.06.11.)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17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21층 16개동 총 1,12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중 계약취소주택 1세대

■ 입주시기 : 2026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3

주택		즈테 청		주택공급면적		주택공급면적 기타 게이다		계약	세대별	총공급	일반공급
구곡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면적	재제를 대지지분	세대수	설립 세대수
2024930032	01	084.9530P	84AP	84.9530	26.5844	111.5374	46.6774	158.2148	68.5616	1	1

(단위: 세대, m²)

(단위 : 원)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등은 변경되어 표현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를 위해 필히 사전 확인바람.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전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바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약식				공급금액		계약금(10%)	()%) 중도금(60%)						잔금(30%)
주택형	표기	동	호수	대지비	건축비	계	게야 내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 시
	(타입)			네시티	[건축의	계 계약시	24.08.15	24.10.15	24.12.15	25.02.15	25.06.15	25.10.15	ᆸᅮ 시	
084.9530P	84AP	114	204	204,116,605	282,883,395	487,0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146,100,000

- 상기 공급금액에는 주택형별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은 별도계약품목(유상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별도 계약품목은 취소세대의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가능함.

- 상기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 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및 주차장,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계약금, 중도금, 잔금납부 약정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 영업일을 납부일로 함.

-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불가하므로, 납부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람.

- 공급금액인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서로 납부하여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함.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 등기 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발코니 확장 금액

[단위 : 원, VAT포함]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주택형	타입	동	호수	공급금액	계약 시	24.08.15	입주지정일
084.9530P	84AP	114	204	1,800,000	180,000	180,000	1,440,000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 및 제공품목 현황

[단위 : 원, VAT포함]

		_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금(10%) 중도금(10%) 잔 계약 시 24.08.15 입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내역
주택형	타입	동	호수	합계	계약 시			품목	공급금액
								시스템에어컨(거실+침실1+2+3)	7,200,000
								—자형 다목적실펜트리	4,100,000
								현관창고	1,200,000
								현관중문	1,700,000
								—자형 아일랜드식탁	1,500,000
								—자형 주방고급특화	10,300,000
								고급드레스룸	7,200,000
084.9530P	84AP	114	204	64,000,000	6,400,000	6,400,000	51,200,000	거실 아트월 세라믹	5,800,000
								비스포크 인덕션4구	1,900,000
								비스포크 냉장고+키큰장	6,200,000
								비스포크 식기세척기	1,400,000
								복합오븐+하부장	600,000
								부부+공용욕실 비데일체형	1,300,000
								청정환기시스템	1,500,000
								—자형주방 바닥타일	12,100,000

4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에 거주 하는 무주택세대주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일반공급	2024.07.03.(수) 9:00 ~ 17:30	■ 인터넷 청약(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취소후재공급 → 주택명 및 주택형 등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09:00~17:30

5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4.07.08.(월) ~ 2024.07.17.(수)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4.07.08.(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자격확인 제출서류]

6

7 H	서류유형		AUCL II II	발급			
구 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제출)		
	0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본인 직접신청 시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용도:주택공급신청용)		
	0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대리인 위임 불가		
	0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발급 요망		
		0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배우자분리세대)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상세발급 요망)		
공통서류 (일반)	0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발급 요밍		
(월만)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0		+017.44.770.0	본인	• 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발급기간: 본인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행정복지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0	출입국사실증명원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 주민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0	해외체류관련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관란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0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 받으려고 하는 경우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0		인감증명서	본인	• 용도 : 아파트계약 위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접수 및 계약불가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서명인증서(외국인에 한함)		
제3자 대리인 신청시	0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와 날인 대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외),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0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부적격당첨 통보를		0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 무허가주택: 관할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한 공문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개별주택가격확인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받은자		0	당첨사실 소명서류	해당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모든 발급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음.

■ 계약 체결시 구비서류

7 4	서류유형			*10. 0. 0.0.1.*1		
구 분	필수	추가 (해당자)	구비 서류	확인 및 유의사항		
	Ο		자격검증서류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0	추가 개별통지 서류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О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 불가, 서명인증서(외국인에 한함)		
본인 계약시	0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대리인 위임 불가		
	0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Ο		계약금 입금 영수증	• 계약금,중도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서 ※ 현금 수납 불가		
_	0		전자수입인지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발급 (인지세: 1억원~10억원 이하 15만원)		
	0		위임장	•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양식 : 계약장소 비치)		
제3자 대리인	О		인감증명서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 불가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서명인증서(외국인에 한함)		
계약 시	Ο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와 날인 대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외),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0		신분증 및 인장	•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함)
-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인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 계약체결 이전에 자격확인 구비서류를 우편접수 제출하시어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 2019.08.1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초과 해외에 체류한 경우, 청약신청자는 사업주체에게 정식 발령공문 등에 의한 해외체류인지 단순 해외여행인지 여부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거주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서류만 인정합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 및 일자" 등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기본 제출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 추후, 계약 시 계약구비서류 변경 또는 추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주택공급 신청 시, 제출서류 명확화(제2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일정기간 거주증명)이 필요합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안내

구분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및 계약체결 기간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장소	비고
자격확인서류 제출	2024.07.09.(화)~2024.07.16.(화)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108번길4, 8층 대성베르힐	우편서류접수
계약체결	2024.07.19.(금)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108번길4, 8층 대성베르힐	방문계약체결

- ※ 지정된 계약 기간 이내에 계약체결이 되지 아니할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됨.
- ※ 서류접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변동시 일정 안내 함.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지정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적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 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계약 진행이 불가함)
-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은 취소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으로 청약신청자가 청약 신청시 잘못된 정보기재(연락처,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 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자의 서류는 분양주체에서 6개월간 보관 후 일괄 파기함.
- ※ 아래 계약 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세대에 대해서는 무순위청약으로 분양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자격 검증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통보받는 경우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분양사무실에 제출함으로써 부적격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 합니다.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 는 동·호수 배정의 추첨 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계약 시 체결된 건물의 공급면적 및 대지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는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에 계약서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시 까지 정산하기로 한다. 단,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인한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이나 증, 개축 또는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 따라 일조권·조망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소음·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생활환경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내 명칭 및 동·호수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입주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한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하는 마감재 선택사항 및 유상옵션계약은 변경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자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분양자(매도인)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 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가 마감자재업체의 선정 및 시공상의 고려 등의 사유로 계약자가 계약 시 선택한 마감자재의 선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이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통지의 방법 및 효과 등은 분양계약서를 준용합니다. 이때, 계약자가 사업주체의 위 통지를 수령하거나 또는 수령간주된 후 2주내에 사업주체에 대하여 서면으로써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마감자재 등 선택사항을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 분양계약서 및 계약구비서류를 준용합니다.
- 본 주택의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공급 받은 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발코니확장공사비,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KB국민은행	032901-04-340614	주택도시보증공사 남부피에프금융센터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KB국민은행	032901-04-340630	주택도시보증공사 남부피에프금융센터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KB국민은행	032901-04-340630	주택도시보증공사 남부피에프금융센터	

- ※ 분양대금, 발코니확장비, 추가선택품목 각 계약별 납부계좌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사업주체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수입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하는 결제관리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을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9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제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만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 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게임사업자가 그 소속 그로자의 속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완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점제의 부강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을 포함하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점제의 부강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을 포함하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점제의 부강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을 포함하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수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들의 공부상 주택으로 통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높아 사업이 실고 아라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수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들의 공부상 주택으로 통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높아 사업이 살고 아라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수과 그 배우자 모두 보장되고 있는 경우에 안되는 제공인의 "건축되고 입무게점병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공조 및 제3조에 따라 건축하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수도와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건물이 되는 경우) 10. 제27조제3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기.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관하는 경우 전후 전략을 건택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대단,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신경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제1호가목을 준유함) 나. 주커전용면적이 83제급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양차인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자주택을 취득성에 최초로 주택을 취득성에 최초로 주택을 취득성에 최초로 주택을 취득성에 최초로 경우에 한다는 경우 나. 유가전용면적이 83제급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신경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병의 제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성에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단한다는 경우 나. 유가전용면적이 83제곱리 되는 조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신경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병의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성에 최초로 전략을 기관하는 경우에 한 한다 함께 기관한 경우 이하이며 주거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 임자주택 취득기계(기본으로 기관 기관으로 의원되어 기관으로 의원되어 기관으로 의원되어 기관으로 의원되어 기관으로 의원되어 기관으로 의원되어 기관으로 의원되었다면 기관으로 의원되었다면 기관으로 의원되었다면 기관으로 기관으로 기관으로 기관으로 기관으로 기관으로 기관으로 기관으로					

기타사항

10

■ 입주자 사전방문 확인 제도 실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주택법」제48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 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전방문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 방문기간 시작일 전에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 2026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독서실,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시설, 세탁실(공간만 제공) 등], 주민운동시설, 지하주차장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 「공동주택 관리법」제36조, 제37조 규정에 의합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계약금액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상 호	㈜종합건축사사무소가람건축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와이케이엔지니어링	㈜와이케이엔지니어링
	3,470,742,000	692,505,500	452,760,000	240,240,000

(단위 : 원 / VAT 포함)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 분 사업주체(시행사)				시공회사(시공사)	
상	호	(주)부산에코델타시티피에프브이	디에스종합건설(주)	대성베르힐건설(주)	디에스종합건설(주)	대성베르힐건설(주)
법	인등록번호	200111-0622253	200111-0351802	200111-0144968	200111-0351802	200111-0144968

- **문의전화 : ☎** 062)365-2106 (내선1번) [상담시간 : 평일 09:00~17:00, 점심시간(12:00~13:00)제외, 주말·공휴일 제외 / 통화량이 많을 경우 전화연결이 지연될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문의전화로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기재상의 오류가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우선합니다.)
- ※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2023.04.07.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